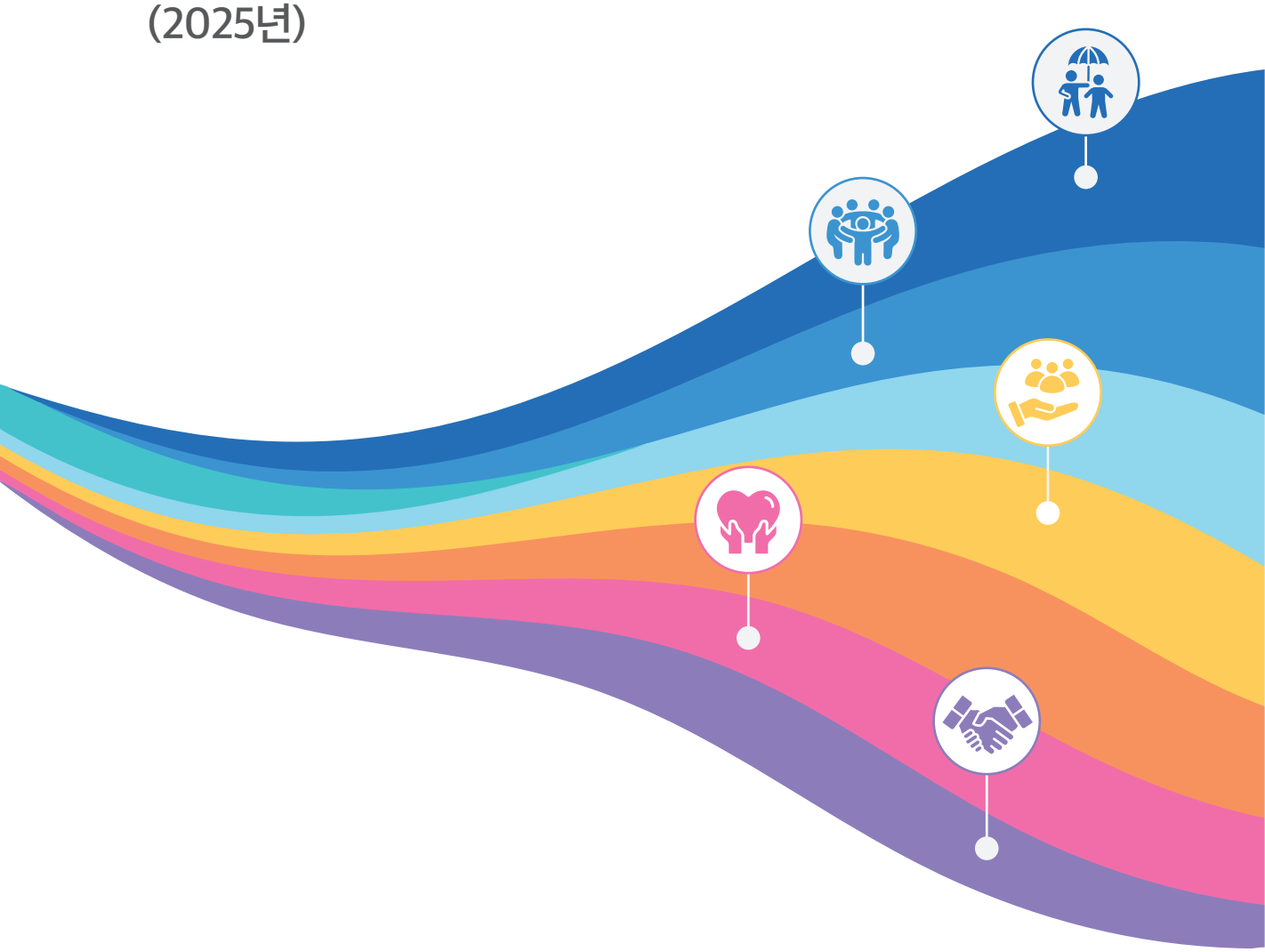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00783-100001-10

Alternative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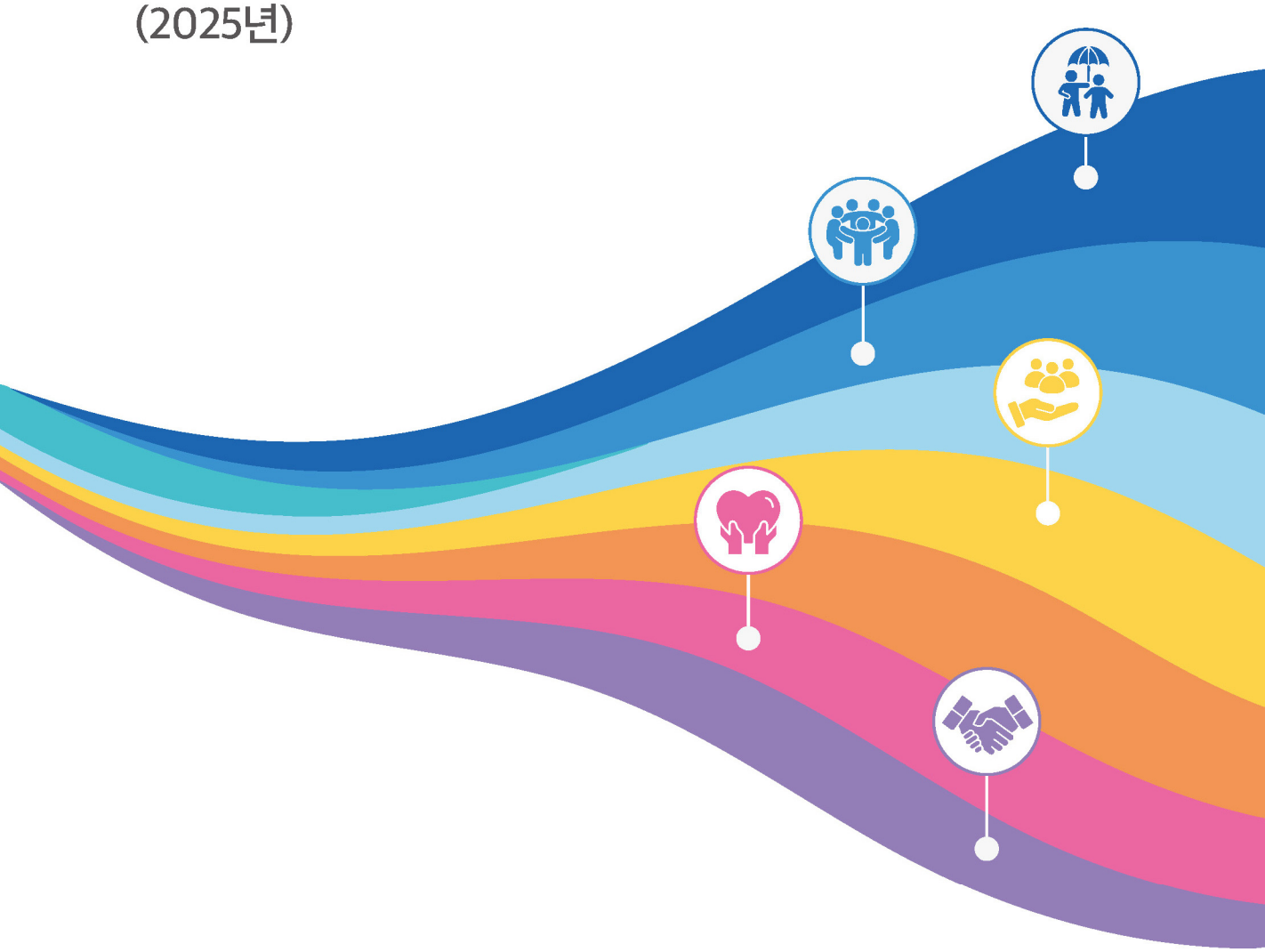


대체역 심사위원회

Alternative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대체역 심사위원회

발간사

2019년 마지막 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대체역 제도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어느덧 일곱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그동안 4천여 명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신념을 마주하며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병역 이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위원회 운영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들은 신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신념에 따른 실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체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밖으로 드러내 볼 수 없는 신청인의 내면을 심사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동안 정립해 온 심사 고려요소와 축적된 사례들이 위원회 운영에 기준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대체역 제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들을 살피면서 원칙과 절차를 공고히 다지는 길을 택해 왔습니다. 대체역 편입심사라는 주요한 임무 외에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대체복무 현장을 방문하여 대체복무요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나라의 대체역 제도 현황을 조사·연구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섯 해 동안 위원회를 지탱해 온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본업의 소임을 병행하면서도 사전심사와 전원회의, 각종 제도개선 논의에 헌신해 주신 위원들, 전국을 발로 뛰며 신청인들을 직접 만나 온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용기 있게 밝히고 심사에 성실히 임해 준 신청인들이 있었기에 이 제도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체역 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체역 제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현 주**

목차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 1

가. 설립 과정 ····· 2
나. 구성 ····· 3
다. 사무국 조직 ····· 4

02 운영 성과 ····· 7

가.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 ····· 8
나.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 11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 16

03 회의 운영 ····· 25

가. 개요 ····· 26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 28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 30

부록

대한민국헌법 ····· 6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7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6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 110

표 목차

표 1-1 추천 기관별 위원회 위원 정원 ····· 4
표 1-2 대체역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 4
표 1-3 위원회 공무원 정원 ····· 5
표 2-1 연도별 대체역 편입신청 추이 ····· 9
표 2-2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사유별) ····· 10
표 2-3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역종별) ····· 10
표 2-4 2025년 월별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 ····· 11
표 2-5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 12
표 2-6 대체역 편입심사 누계 ····· 15
표 2-7 2025년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 15
표 2-8 전시근로소집 시 대상별 임무 및 대체역 편입신청 가부 비교 ····· 17
표 2-9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관련 제1·2안의 장·단점 분석 ··· 19
표 2-10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관련 제도개선안 요지 ····· 20
표 3-1 사전회의 현황 ····· 26
표 3-2 전원회의 현황 ····· 27

그림 목차

그림 1-1 위원회 조직도 ····· 5
그림 2-1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 13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가. 설립 과정

나. 구성

다. 사무국 조직

01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요

가. 설립 과정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심사하여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1949년 「병역법」 시행 이후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과거에는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처벌받거나 형사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2000년대 초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1]와 가족들의 현실이 보도되면서[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3],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한편 입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도록

1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양심'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2019년 1월 4일 국방부 기자회견).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재할 때에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대체역도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이고, 대체역으로 편입신청 하려는 사람은 군사훈련을 포함한 현역·보충역 등의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군 복무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신윤동욱. (2001년)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 한겨레21. 제345호

3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권고하였다[4].

이후 국회나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5].

2015년부터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9일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나. 구성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대체역법」 제정 당시 위원 정원은 29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7명)이었으나, 2023년 6월 29일 「대체역법」 일부개정법률[6]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 정원이 13명으로, 상임위원의 정원이 최대 5명에서 최대 3명으로 각각 축소되었고, 추천기관별 추천 인원수가 2~3명씩 감소되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4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참조

5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6 2023년 5월 16일 법률 제19404호로 개정된 것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표 1-1 추천 기관별 위원회 위원 정원

(단위: 명)

기관 / 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 협회장
13	2	2	3	2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표 1-2 대체역 심사위원 직업군별 현황

(단위: 명, 2025. 12. 31. 기준)

구분 / 계	법조인	교수	인권 분야	공무원 (전·현직)
12[7]	4	2	1	5

다. 사무국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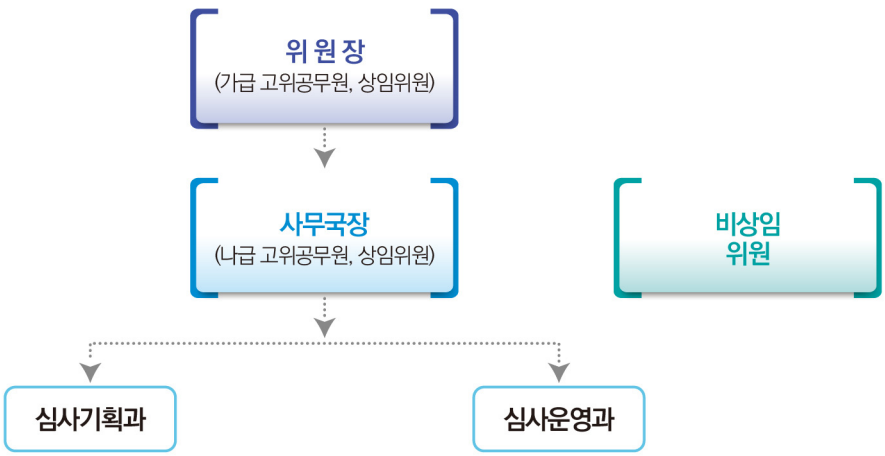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대체역법」 제10조). 사무국은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획과는 위원회 전원회의 운영, 위원 관리 등 대체역 편입심사 총괄, 기획·인사·예산·전산·국회 등 행정 지원 및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심사운영과는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사실조사 등을 담당한다. 과거 심사기획과에서도 사실조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심사운영과에서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24. 12. 31.부로

7 2025. 10. 24. 제3대 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2025. 말까지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2025. 12. 31. 기준 위원 현원은 총 12명임

심사운영과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심사운영과의 행정소송·심판 대응 업무를 심사기획과로 이전하였다.

그림 1-1 위원회 조직도

(2025. 12. 31. 기준)



위원회 공무원 정원은 위원장, 사무국장 포함 28명이다. 당초 정원은 31명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그간 진행해 왔던 신설기구 성과 평가를 완료하고 기구를 정규화하면서 사무국 정원을 3명 감축하여 28명으로 하는 방안을 2025년 9월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5. 12. 30.부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에 해당한다.

표 1-3 위원회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이하
28	2(가급 1, 나급 1)	2	9	7	8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02

운영 성과

가.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

나.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02

운영 성과

가.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

1) 개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대체역법」 제3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30세 이하[8] 현역병입영 대상자 △ 30세 이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2) 신청 방법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작성한 각각의 주변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변인 진술서를 작성한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9])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

8 이때 30세 이하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대체역법」 제2조, 「병역법」 제2조 제2항).

9 대체역 편입신청용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말한다.

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편입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어 위원회 누리집(https://www.mma.go.kr/simsa/index.do.) '민원신청'을 통해서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3) 현황

「대체역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1조, 「대체역법 시행령」 부칙(2020. 6. 30.)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4,030명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였다.

표 2-1 연도별 대체역 편입신청 추이

(2020. 6. 30.~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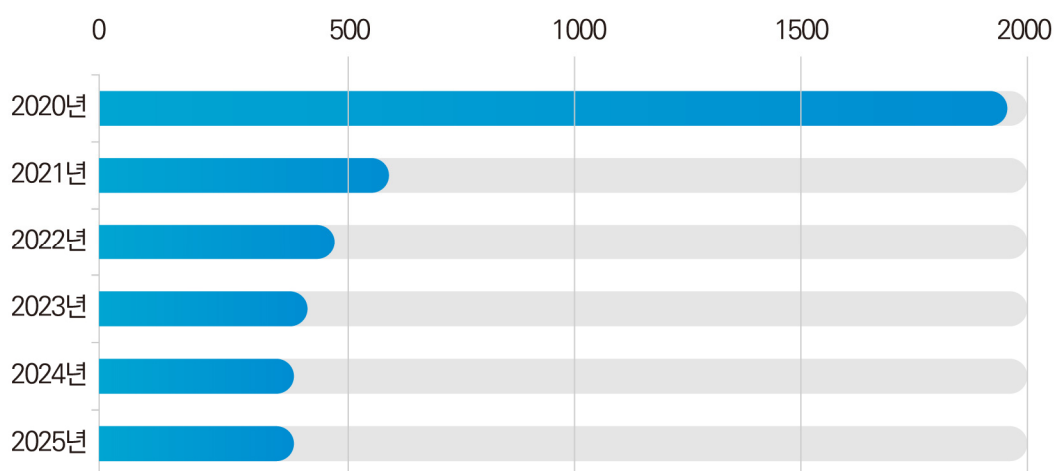


표 2-2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사유별)

(2020. 6. 30.~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적 신념		개인적 신념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2020년	1,962	760	1,191	0	11
2021년	574	106	459	2	7
2022년	453	24	421	0	8
2023년	368	9	352	0	7
2024년	338	2	331	0	5
2025년	335	1	329	0	5
누 계	4,030	902	3,083	2	43

* 표에서 '무죄확정자'는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체없이 인용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실조사자'는 「대체역법」에 따른 사실조사,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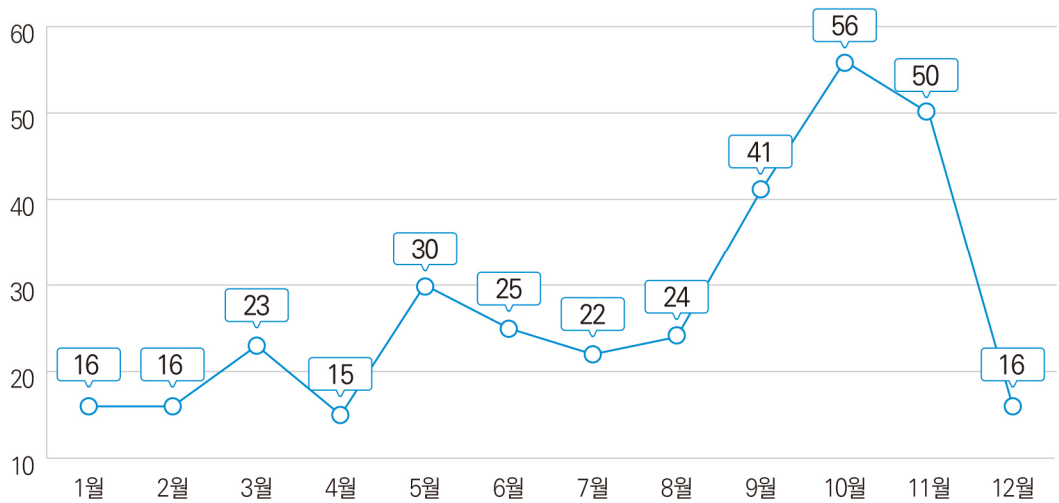
표 2-3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역종별)

(2020. 6. 30.~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연도	계	현역 대상	사회복무요원 대상	예비역 등
2020년	1,962	1,884	72	6
2021년	574	505	62	7
2022년	453	392	33	28
2023년	368	310	44	14
2024년	338	305	26	7
2025년	335	299	25	11
누 계	4,030	3,695	262	73

표 2-4 2025년 월별 대체역 편입신청 현황

(2025. 1. 1.~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나.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1) 개요

대체역 편입심사는 사실조사, 사전심사 위원회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의결 3단계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 간 토의를 거쳐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한다(「대체역법」 제13조, 제14조).

위원회는 편입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1년 동안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24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1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

구 분	고려요소
양심결정의 근거	① 양심형성의 계기 · 종교 활동 및 교리학습 · 평화와 관련된 인권·사회활동 ·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자료 등에 대한 접근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폭력의 경험
	② 양심결정의 구체적 근거 · 전쟁과 살상을 금지하는 종교의 가르침 ·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세계관 등 ·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 내용
양심결정의 실천	③ 양심결정에 부합하는 활동 · 성실한 종교 생활 및 교리 학습 · 전쟁 반대와 관련된 사회 활동 ·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연구 등 각종 활동 · 양심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록, 주변인과의 소통
	④ 본인의 징계, 수사 및 범죄 경력에 대한 해명 · 양심의 갈등 상황에서의 극복 사례 · 징계처분이나 위법한 행동에 대한 해명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	⑤ 군 복무 거부에 대한 이해와 의지 · 군 복무 거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명분에 따른 선택적 전쟁거부인지 보편적 전쟁거부인지
	⑥ 대체역 복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 의지 · 대체역 도입취지와 복무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 대체역 복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위원회는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하므로 편입신청의 내용에 따라 위원 간 편입심사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위원회는 편입심사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대체역 편입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하였다.

2)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가) 개요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한다.

그림 2-1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나) 사실조사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심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참고인 등의 출석 또는 진술, 진술서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대체역법」 제11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실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 신청인의 성장 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담당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담당 조사관은 편입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서면조사, 신청인 면담 조사, 주변인, 단체 등에 대한 전화·현장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다.

다) 사전심사

위원회는 「대체역법」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 위원회를 두어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전심사 위원회는 회의(이하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한 신청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하고,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

사전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나 전원회의와 달리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각자 인용·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사전심사 위원장이 이를 취합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라) 심사·의결

사전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자료 등을 검토·심사한 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최종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 특례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서 위원회는 사실조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인용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일에 징·소집 연기가 해소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 현황

표 2-6 대체역 편입심사 누계

(2020. 6. 30.~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적 신념 사유			개인적 신념 사유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인 용	3,796	3,776	892	2,884	20	2	18
기 각	9	7	0	7	2	0	2
각 하	9	3	0	3	6	0	6
철회 등*	94	77	10	67	17	0	17
합 계	3,908	3,863	902	2,961	45	2	43

* 철회 등 : 심사중단(사망) 2건 포함

표 2-7 2025년 대체역 편입심사 현황

(2025. 1. 1.~2025.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적 신념 사유			개인적 신념 사유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인 용	310	309	1	308	1	0	1
기 각	3	2	0	2	1	0	1
각 하	1	1	0	1	0	0	0
철 회	14	10	0	10	4	0	4
합 계	328	322	1	321	6	0	6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

1) 전시근로역에 대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논의

위원회는 2025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2024년[10]의 논의를 이어 전시근로역에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전시근로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거나, 생계곤란·고아·귀화자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거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편입하게 된다. 평시에는 부과되는 의무가 없으나, 전시에는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 및 대체역과 더불어 근로소집[11] 대상이 되는 역종이다. 다만, 대체역은 「병역법」 제54조 제2항 및 「대체역법」 제16조[1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되어 군사 지원 업무를 하더라도 무기·흉기의 사용·관리·단속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는 행위 등으로부터 면제되는 데 반해, 전시근로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설사 이들이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있더라도 전시에 폭력과 관계된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도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전시근로소집 시에도 무기나 폭력과 무관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자는

10 2024년 제9차 전원회의 참고. 대체역 심사위원회(2025),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쪽~23쪽.

11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12 「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논의가 있다. 현행법상 전시에는 대체역 편입 심사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13] 평시에 전시근로역에게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전시근로소집 시에 이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업무에 동원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위원들은 △ 전시에 소집된 개개인이 업무 거부를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대체역 편입을 통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임 △ 다른 전시근로소집 대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신청할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음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적더라도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이 바람직함 △ 현재 전시에는 대체역 편입 심사조차 정지되는 구조인데 전시근로역에 대한 대체역 편입 자격 부여는 논의가 적절치 않아 보임 △ 현행법상 대체역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대체역 복무를 한다는 의미인데, 전시근로역은 평시 복무 의무가 없는 역종이어서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은 그 의미나 결과를 현행 대체역과 다르게 설계해야 할 듯함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무국은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지속 검토하여 좀 더 발전된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 2-8 전시근로소집 시 대상별 임무 및 대체역 편입신청 가부 비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임무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대체역 편입신청
보충역 (병력동원소집 미지정자,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 2. 진지구축, 도로·교량·항만·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 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 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 5. 전시 급유·급수·취사지원 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가능
전시근로역		불가
대체역	위 임무 중 아래 행위는 제외됨(「병역법」 제54조 제2항) 1. 무기·흉기를 사용·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 살상·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13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2) 31세 이상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논의

위원회는 2025년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작년[14]에 이어 31세 이상자에게도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대체역법」은 제정 때부터 30세를 초과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편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대체역법」 제3조 제2항[15]), 이는 「병역법」 제61조 제1항[16]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가 30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30세를 넘겨 귀국하게 된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17], 이로 인해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사무국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여 △ 군 복무 거부 신념의 형성은 연령과 무관하므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동안에는 나이 제한 없이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제1안 △ 연령 제한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모든 역종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대체역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입영일 연기 목적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2안 △ 국외체류 중 귀국자, 장기입원자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30세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체역 편입신청을 허용하되 구체적인 판단을 위원회에 맡기는 제3안의

14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 참고. 대체역 심사위원회(2025),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3쪽~24쪽.

15 「대체역법」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16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17 해당자는 결국 통지받은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여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 제3항에 따라 2025. 5. 21. 대체역에 편입되었다(대체역 심사위원회 2025년 제10차 전원회의).

세 가지 방안을 보고하였다.

표 2-9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관련 제1·2안의 장·단점 분석

구 분	(1안)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신청 및 징소집 연기 허용	(2안) 현행 유지
장점	• 대체역 편입 신청의 연령에 따른 형평성 확보 • 신청인에 대한 폭넓은 대체역 신청 권익 보장	• 병역의무자에 공통된 연기 기준 적용으로 병역의무 이행 지연 방지 및 조기 병역이행 도모 • 대체역 신청인에 대한 특혜 논란 최소화 및 연기 목적 악용 가능성 차단
단점	• 병역의무자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 신설로 인해 대체역 신청인에 대한 특혜 인식 확산 우려 • 연기 목적으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등 제도 악용 가능성	• 대체역 편입신청의 연령에 따른 형평성 확보 곤란 • 원천적인 신청 자격 배제로 31세 이후 국내입국자에 대한 권익 제한

위원들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병역 이행을 원하는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는 한계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고, 추가적으로 △ 대체역 편입심사는 현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거기에 연령 제한까지 부과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특히 전시근로역에게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31세 이상이라고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짐 △ 연령 제한을 대체역에 한하여만 철폐하는 것은 다른 역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어서 제도 수용성이 낮다고 봄 △ 장기적으로는 대체복무를 병역법의 틀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람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의 안으로 종합하여 추후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5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무국은 지난 제8차 전원회의의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31세 이상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의결하였다. 여전히 병역 이행 시기를 늦출 의도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없고,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2025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심사한 무죄확정자 신청인의 경우처럼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길이 있는데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병역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표결을 통하여 △「병역법」상 연령 제한의 입법 취지에 맞춰 현행 신청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건별로 판단하는 구조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제3안)을 확정하고 사무국에서 개정안을 좀더 다듬기로 하였다.

표 2-10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관련 제도개선안 요지

취지	• 징소집일자 연기에 연령상의 제한을 두는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 장기 국외체류 후 귀국이나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31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처럼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허용하여도 연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 •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만 대체역 편입신청을 허용하면 공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공익과 양심의 자유 실현이라는 기본권 보장이 적절하게 조화될 것으로 판단됨
내용	• 대체역 편입신청 가능 연령을 현행과 같이 30세까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31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예외적으로 대체역 편입을 허용

이후 2025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무국은 제도개선안의 최종본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31세 이상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사유를「대체역법」대신「대체역법 시행령」즉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는 안도 그간 거론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현재까지 한 건밖에 없었던 일인 만큼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참고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위원회에 판단 권한을 부여하여 건별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안하였다.

3) 정책 현장 방문 : 의정부교도소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현장을 둘러보고 복무 중인 요원들을 격려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5년 4월 25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총 38명으로, 급식·물품·시설관리·보건위생·행정지원 등의 분야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수용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위원들은 복무 현장을 확인하고, 교도소 관계자 및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무자들은 복무 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축할 것, 복무기관 및 형태를 늘려 대체복무요원들이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 여호와의 증인 요원들이 종교활동을 위한 외부활동에 제한을 덜 받도록 외출 시간과 기회를 확대해 줄 것, 근무지별 환경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복무 환경 개선을 희망함 등의 건의를 하였고, 위원들은 2024년 5월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되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4) 해외 사례 조사 : 대만

위원회 사무국은 외국의 대체역 제도 운영 실태와 최근 동향을 조사하여 한국 대체역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을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에서는 대만 내정부 산하기관으로 대체복무자의 훈련, 선발, 급여, 보험,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체역 훈련 및 관리센터, 종교 사유 대체복무자의 최대다수를 이루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속된 대만 지부, 대체복무기관 중 하나인 묘리현 보훈지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대체복무제도의 역사 및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종교 사유 대체복무자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대만은 국방의 현대화로 병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입영 지연이 가시화되고 기존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고, 이때 대체복무 자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종교 사유, 가정 사유, 전문기술 자격, 자원봉사 자격, 그 외 일반 자격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종교적 사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만 이후 2022년 말 병역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종교 사유와 가정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당시 4개월이었던 현역병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종교 사유의 대체복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복무하게 하였으나, 2022년 말 병역법 개정으로 2005년 출생자부터 현역 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서 종교 사유 대체복무 기간 역시 연장되어, 2005년 이후 출생한 종교 사유의 대체복무자들은 1년 2개월을 복무한다.

종교적인 사유로 대체복무에 지원하려면 징집 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은 병역 이행 연령의 남성으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신앙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그 신앙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종교의 교리가 무기 사용 또는 군사 행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은 병역검사 후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따라서 입영 후나 복무 중 대체복무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서, 자필 이력서, 신청 사유서, 소속된 종교단체의 정부 등록 서류 및 신청인에 대한 인증서를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향(진, 시, 구)에 지원서를 내면 해당 기관에서 5일 안에 1차 조사를, 상급 단위의 지역행정기관인 직할시 또는 현(시) 정부에서 10일 이내에 2차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 중앙행정기관인 내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내정부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중앙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심의를 한다.

중앙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내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기관, 지방 정부 병역 행정 단위, 학계, 종교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21~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신청인이 속한 종교의 교리, 신청인의 신앙 지속기간과 강도, 종교활동 내역, 병역거부의 동기와 진지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충분한 진정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징병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교단 차원의 공식 교리와 개인의 신앙·양심이 일치하는지가 주된 심사의 내용이 된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입영을 유예하고 최대 1년의 관찰 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 실제 한 종교활동과 신앙 유지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 과정 때문에 2022년 말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종교 사유의 대체복무 신청인 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 최근 10년간 종교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총 452명으로 이 중 450명이 승인되었으며, 그중 여호와의 증인이 41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불교도로 17명, 이어 이슬람교도 10명 순이었다.

2005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종교 사유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1년 2개월이며, 합숙이 원칙이나 평일 저녁 점호 시까지 외출이 자유롭고 주말 귀가도 권장된다. 이전에는 일반 병원이나 요양센터, 소방서 등에서도 복무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대만의 종교 사유 대체복무자는

모두 한국 보훈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국군 퇴역 상이군인 보도 위원회 소속의 보훈 관련 기관(보훈병원, 보훈 요양원, 보훈 서비스센터 등)에 배치되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생활 지원 및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시·비상사태에는 예비역 대체복무자들도 소집돼 재난구조 등 민방위 업무를 지원한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 대만에는 대체복무자들을 군 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약체라서 훈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여겨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으나, 차츰 국가에 필요한 봉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코로나19 방역 현장이나 각종 재해 복구 현장에 대체복무 인력이 투입되어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중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복무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점, 대체복무제도 도입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4개월)에 비추어 대체복무기간을 1.5배(6개월)로 설정하였음에도 최근 병역법 개정 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때 대체복무기간을 14개월로 책정하여 복무기간의 격차를 줄인 점, 3차에 걸친 심사와 그에 더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관찰 기간을 두는 등 다층적 검증으로 제도 악용을 방지·차단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대체역 복무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 출장 보고서 전문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03

회의 운영

가. 개요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03

회의 운영

가. 개요

1) 사전회의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한 신청인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체역법」 제7조, 「대체역법 시행령」 제11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는 추천기관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나 전원회의와 달리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은 각자 인용·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사전심사 위원장이 이를 취합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2025년에는 사전심사 위원회를 각 조별 위원 5~6명씩 2개조로 운영하며 회차당 5~7건 정도를 심사하였다.

표 3-1 사전회의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심사 횟수(회)	30	144	112	72	58	54	470
안건 수(건)	180	1,089	574	457	344	324	2,968

2) 전원회의

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 △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제안 △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대체역법」 제4조 제2항).

사전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조사 자료, 사전심사 자료 등을 검토·심사한 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최종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의결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체역법」 부칙(2019. 12. 31.) 제2조 특례 대상인 신청인에 대해서 위원회는 사실조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체없이 인용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일에 징·소집 연기가 해소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5년 총 23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14건(인용 310건, 기각 3건, 각하 1건)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심사하였고, 대체역 편입심사 기간 연장, 대체역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표 3-2 전원회의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심사 건수[18] (건)	무죄확정자	673	182	29	7	2	1	894
	사실조사자	58	1,115	627	461	346	313	2,920
	소계	731	1,297	656	468	348	314	3,814
회의 개최 횟수(회)		6	33	25	23	22	23	132

18 접수된 신청 건수 중에서 신청인의 철회, 사망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심사가 완료된 건수만을 집계함

나. 전원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19]

차수 (개최일)	대체역 편입심사(건)				그 외 사항(의결·보고·토의 등)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	
제1차 (1월 8일)		12			
제2차 (1월 22일)		11		20	
제3차 (2월 12일)		12		21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절차 보고
제4차 (2월 26일)		18		19	• 운영규정 개정(제3차)
제5차 (3월 12일)		12		20	• 수형 사유 병역처분 변경 관련,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2025. 1. 3. 시행)
제6차 (3월 26일)		18		6	
제7차 (4월 9일)		18		4	• 〈제도개선〉 전시근로역에 대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여부 논의
제8차 (4월 23일)		12		12	• 〈제도개선〉 31세 이상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신청 자격 부여 여부 논의
제9차 (5월 7일)		11		4	
제10차 (5월 21일)	1	12		4	• 〈제도개선〉 31세 이상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관련 추가 검토 • 의정부교도소 방문 결과 보고
제11차 (6월 4일)		12		4	
제12차 (6월 18일)		12		2	• 〈제도개선〉 31세 이상자에 대한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 관련 추가 검토

19 대체역 편입심사,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위주로 서술하였다.

차수 (개최일)	대체역 편입심사(건)				그 외 사항(의결·보고·토의 등)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	
제13차 (7월 2일)		11		1	
제14차 (7월 16일)		12		1	
제15차 (7월 30일)		12			
제16차 (8월 13일)		11			
제17차 (9월 3일)		12		3	
제18차 (9월 17일)		18		1	
제19차 (10월 15일)		17		1	
제20차 (11월 5일)		12	1		
제21차 (11월 19일)		18		4	
제22차 (12월 3일)		12			
제23차 (12월 17일)		18		3	

다. 전원회의 주요 내용

1) 제1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월 8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2) 제2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월 22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20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20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3) 제3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2월 12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2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으로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했다 취소한 이력의 신청인이 있어, 군 복무 거부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 이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논의가 있었다. 해당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 태어나 중학생일 때 침례를 받았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듬해인 2024년 11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그 사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였다 한 달여 후에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모집의 한 형태로, 특정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연계하는 제도이다.[20] 현역병 모집 분야에 해당하고, 지원자를 받아 그중에서 선발하는 구조이므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에 지원한 것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는 취업맞춤특기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지원서를 썼다가 병무청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고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부 위원들은 그러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지원 경로를 스스로 찾아 지원하여야 하는 다른 현역병 복무 지원 제도와는 달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병역판정검사장 등 지원 가능한 대상자가 많은 장소에 병무청 담당자가 찾아가 짧은 시간 안에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서를 제출받아 담당자가 이를 등록하는 구조여서, 다중에 휩쓸려 잘 알지 못한 채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추후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야 현역병 지원임을 인지하고 취소한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신청인이 심사 과정에서 잘 모르고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지 현역병 지원 의사가 있어 지원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대체역 수행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여 사전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의 인용 의견을 받고 열흘 뒤 신념의 변화를 이유로 편입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있어, 심사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 의견이 있었다.

4) 제4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2월 26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9명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가결

20「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청소년기에 3~4년 간 종교생활을 중단했던 적이 있고, 침례를 받은 뒤 해병 모집병 지원과 철회를 2차례 한 사실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청인에 대해 대면 심사가 있었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생활을 했으며, 중고등학교 시절 종교를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 집회 참석을 중단하고 활동을 그만두었던 와중에도 친구들에게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이므로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바, 군 복무 거부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해병 모집병에 2차례 지원했다 취소한 이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학 입학이 또래에 비해 늦었는데 대체역에 편입될 경우 소집 대기 기간과 3년의 복무기간을 합쳐 사회 진출이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되므로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지원부터 하고 고민할 생각으로 했던 일이라 하고, 이 기간이 대체역 편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었고 실제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이 굳건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신청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신청인은 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된다면 이를 다툴 것이지만 패소할 경우 어려서부터 신념으로 자리하게 된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수감생활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복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대체역 제도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성실 복무의 의지도 확인된다.

▶ 기각 의견

대법원은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확고’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아야 한다.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 하였고, ‘진실함’이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다른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종교활동과 세속적인 생활 간의 내면적 갈등으로 침례를 미루어 왔으며, 침례 후에도 적극적인 종교생활이 나타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재개한 이력에 더불어 복귀한 뒤에도 특별한 활동 내역이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을 장기간 하는 등 신앙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해병 모집병에 두 차례나 지원하여 한 번은 면접까지 한 사실이 있는 등, 신청인이 그동안 종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교리를 실천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군 복무 거부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신청인이 대체역으로 편입되더라도 소집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어 여전히 고민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 이번 회차에는 「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결이 있었다. 「위원회 운영규정」은 2020. 11. 6. 제정된 이래 그간 2차례 개정되었는데, 2023년 말의 제2차 개정 이후로 누적된 개정 소요를 모아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접수 시 세부 처리 절차, 전원회의 의결 방식 개선 건 등에 대해 일괄 상정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5) 제5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3월 12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20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6) 제6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3월 26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1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6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줄곧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고 고등학생 때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에 지원하였다 취소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이 있어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하여 침례 시기를 미루었을 뿐으로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으며 신앙에 기반한 군 복무 거부 신념 역시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고, 모집병 지원은 고등학생 때 학교로 홍보차 방문한 사람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된다고 들어 서명하여 제출하기만 했을 뿐 군 입대 지원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수형(受刑)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 규정이 2024. 7. 2. 개정[21]되어 2025. 1. 3.부터 시행되었기에, 개정 내용에 대한 사무국 보고가 있었다. 기존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편입시켜 병역을 감면하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하려는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병역법」 제86조)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전시

21 대통령령 제34625호로 신설·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8항 및 제9항: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근로역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그러한 병역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행방을 감추었거나(「병역법」 제8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않았거나(「병역법」 제87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징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병역법」 제88조 제1항),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거나(「병역법」 제88조의2),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병역법」 제94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2025. 1. 3. 이후에 징소집 기피 등 「병역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된다.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이 개정이 의미있는 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각하되거나 인용 후 자의 또는 타의로 대체역 편입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대상자들은 원 신분에서 징소집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징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대체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거나 편입이 취소되어 원 신분으로 복귀하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징소집에 응하지 않아 기소되면 대체로 법원에서 병역 거부 신념에 따른 입영·응소 기피임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 이행 의무를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전시근로역 편입이 불가능해져, 징소집에 응할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 지속적으로 의무 부과가 반복돼 반복·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 대체역 제도가 완전한 민간 대체복무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체역에 편입되었음에도 현행 대체복무제도 하에서는 대체역으로 복무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 기피로 기존 관행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에 처해지더라도 병역 이행 의무가 유지되고, 동시에 「대체역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므로, 이들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원 신분으로 복귀해 징소집 대상이 되어 본인의 신념에 어긋나는 형태로의 병역 의무 이행을 되풀이해 요구받게 된다.[22] [23]

22 다만 현재는 「대체역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금고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법률 제21557호, 2026. 4. 21. 개정

위원들은 이에 대해 △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것은 양심상의 이유 때문인데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은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입영·응소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가혹해 보임 △ 신청인들에 대한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규정이 새로이 생겼다는 것을 신청인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7) 제7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4월 9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4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 외 전시근로역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 부여에 관한 대체역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다.[24]

8) 제8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4월 23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2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사회학을 공부·연구하며 형성한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및 시행). 그리하여 일단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설사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된 경우라도 원 신분으로 복귀하지 않고 대체역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다음 각주 참고.

23 「대체역법」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편입될 때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4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인은 사회운동에 깊이 참여한 부친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 폭력의 역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그러한 신념의 발로로 국가가 강제하는 획일적인 질서에 반대하고 살생을 훈련하는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체복무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입영 거부에 따를 수감생활과 이후 삶에 있을 불이익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신념에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를 택했다. 그러나 전역 후 관련 공부를 더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계속하면서, 현역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느꼈던 부채 의식, 죄책감 등이 심화되었고, 더 이상 군사훈련으로 내면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뒤늦게나마 예비군 대체복무를 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현재 대체역 편입신청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려서부터 종교적 배경 속에 자라난 경우가 많아 양심 실천의 기간이 긴 반면, 개인적 신념의 발로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긴 시간에 걸쳐 탐구해 가면서 비로소 군 복무 거부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어서, 성인이 되어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러한 양심이 형성된 배경이나 양심 실천의 내용을 종교적 신념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지라도 본인이 얼마나 깊숙이 고민하고 그걸 내면화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신청인은 비폭력과 평화주의 등에 기반한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점차 깊고 확고해져,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역 복무를 했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미비한 와중에 판사 앞에 본인의 양심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확신하기 어려웠고 수감생활을 경험한 부친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갈등하다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으나 자책과 후회가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반전평화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룬 글을 잡지 등

매체에 기고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도 사격은 양해를 구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 양심의 결정을 실천에 옮겨 온 점도 확인된다. 대학원생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예비군 훈련을 1년에 8시간만 받을 수 있는데도 훨씬 긴 기간인 3박 4일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등 대체역에 대한 이해와 성실 복무 의지도 확고하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국가폭력이라는 거대담론 하에 젠더문제, 군사문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거론하고 있으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병역거부 외에 다른 국가 폭력의 구체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일상적 실천이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이 보여주는 신념의 구체적인 존재나 그 강도가 대체역 편입을 허가할 만큼 명확하거나 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자체가 탈군사주의적인 스스로의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훈련을 거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현역 복무를 무사히 마쳤을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3년차까지 마쳤다. 또한 신청인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그러한 분야에 대해 공부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에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깊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확신을 갖기 어렵다.

신청인은 대체역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성실 복무 의지는 인정되나, 신념을 갖게 된 계기, 기간, 강도 등을 보았을 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고, 예비군 복무를 포함하여 기존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원회는 31세 이상인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25]

25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제9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5월 7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4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1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10) 제10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5월 21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무죄확정자 대체역 편입 인용 : 1명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4명 • 31세 이상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관련 제도개선안 : 가결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무죄확정자 1명,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무죄확정자 1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이주 목적으로 가족과 국외에서 거주하다 30세를 넘겨 한국으로 돌아와 입영 통지를 받았는데, 2023년 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대체역법」 제3조 제2항[26]에 따른 각하 대상임을 안내받은 바 있다. 결국 해당 신청인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을 거부하여 입영 기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고발 및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입영 거부가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26 「대체역법」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사실조사자 중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라나 중학생 때 침례를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대학 졸업 후 활동을 중단하였다 보충역 복무 완료 뒤에 믿음을 회복하여 예비군 2년차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업에 전념하면서 종교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고 멀어지게 되어 모든 사회적·개인적 종교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 큰 갈등 없이 응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참된 종교라고 깨닫게 되어 복귀를 고민하다 여호와의 증인 행사에 가족의 초대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고심 끝에 신앙생활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양심의 타협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의 믿음이나 여호와와의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짧은 기간이라도 총기를 잡는 훈련을 더 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심신이 피폐해져 종교활동을 그만두었으나,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쳐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기에 짧은 기간이라도 총기를 잡는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예비군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진술하는 솔직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복귀의 동기 부분이 기록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 진술을 통해 복귀에 대한 신청인의 결심이 진실되고 확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집해제 뒤 복귀하기 전에도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하며, 본인이 흔들렸던 부분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통해 현재 신앙생활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확고해 보인다.

신청인은 예비군 대체복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업상 예비군 대체복무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더 큰데도 성실히 복무할 의지가 뚜렷하다. 군 복무 거부에

대한 진실되고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해 왔으나, 교리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 폭력적인 게임을 1년 이상 한 사실, 경제상황을 이유로 종교활동을 중단했던 사실, 짧은 기간 총기를 사용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실 등이 있는 점은 언제든 신청인의 종교적 신념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하고, 신청인이 종교활동을 재개하여 지난해 말 회중으로부터 복귀를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점을 더불어 고려하면,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종교적 신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경제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종교활동을 중단하였다가 그간의 삶에 회의를 느껴 본인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시 종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진술하고 있으나, 본인의 양심이 강화되었다고 보이기보다는 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한 반성이 더 크다고 느껴졌으며, 대면심사에서도 신념과 양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념이 과연 군복무를 거부할 수준의 강한 신념인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

신청인의 신념은 경제생활, 사회생활 같은 신청인의 주변 여건에 따라 자주 변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종교적 신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에 이어 31세 이상에게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논의, 의결하고,[27] 4월 25일에 있었던 의정부교도소 방문 결과를 당일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들과 공유하였다.[28]

27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제11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6월 4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4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12) 제12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6월 18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1명, 기각 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2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11명에 대하여는 인용을, 1명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기각 결정된 신청인은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하여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고, 육군 동반입대병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가 입영을 무단 기피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해당 신청인에 대한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군 복무 거부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한 것에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가 더 컸다고 하고, 동반입대를 계획할 시기를 전후하여 종교활동을 중단했었으며 현재도 종교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기초가 되는 신앙이 확고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신청인은 스스로도 군 복무 거부 신념이 어려서는 있었으나 20대가 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도 확고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 친구와 육군 동반입대를 신청했다 가족이 걱정되어 입영기피에 이른 사실이 있는 등, 군 복무 거부의 일관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신념이 있다 하여도 불확실한 정도거나 확고하지 못한 정도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심사 과정에서 대체역에 대한 복무 의지는 물론 군 복무 거부 신념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위원회가 대체역 편입신청을 기각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뜻도 표명한 만큼, 대체역 복무 의지가 분명하다 보기 어렵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고, 본인도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여러 차례 그 점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대체역 복무를 원한다는 점 또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괴롭거나 힘들지는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침례를 받은 것에 주변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 하고 있으며, 대체역 편입신청에도 주변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본인이 원했고 스스로의 의지가 전보다 더 명확해졌기에 위원들과의 대면심사에까지 이르렀다고 한 바, 이를 종합했을 때 본인에게 진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대한 본인의 양심에 부합하는 쪽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용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 위원회는 사무국으로부터 31세 이상에게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안의 최종본을 보고받았다.[29]

29 세부 내용은 '2. 운영 성과' 중 '다. 대체역 제도 발전 관련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제13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7월 2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1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종교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때 활동을 중단하였고, 12년 뒤 다시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쟁 준비와 연습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원하는 신청인이 있었다.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인용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비록 침례 전이지만 앞으로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며, 예비군 복무 거부 신념이 뚜렷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가장 힘든 현역 복무를 다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3년차까지 이수한 지금에 와서야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신념의 변화가 있었다는 진술에 믿음이 가고 양심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대체역에 대한 복무 의지도 강하다.

신청인은 기간과 복무 방식 측면에서 본인에게 더 불리한 예비군 대체복무를 선택하여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으며, 만약 편입되지 않아도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할 것이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체역 편입신청에 진정성이 인정된다.

종교생활을 재개하고 대체역 편입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지만, 깨달음을 얻고 신념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공감하고, 신청인이 본인의 양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대체역 편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종교활동을 재개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침례를 받지 않아 정식 신도가 아니며, 믿음이 약해져 종교활동을 중단했던 것은 물론 중단 기간에 여러 차례 교리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특히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제도를 택해 현역에 복무하고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3년차까지 정상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예비군 복무 거부 의사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현역 복무 당시에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역과 종교생활을 재개한 시기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을뿐더러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계기도 불투명하다.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아 신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어 대체역 복무를 인정할 정도로 신념이 확고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신청인에게는 사회부적응자 취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래들의 놀림이 싫어서 종교활동을 중단하였다는 진술에는 종교적 가치보다 사회적 평가나 외양을 더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도 신청인의 답변에 종교적 신념과의 갈등에서 오는 고뇌나 좌절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앙심의 깊이나 수준, 활동 궤적이 충분히 깊지 않아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활동 중단 기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회개나 뉘우침, 고뇌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확고하다면 그동안 확고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4) 제14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7월 16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꾸준히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요구되는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왔음을 이유로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은 신청인에 대하여, 교리에 위반하는 행동을 심사 6개월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생활에서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해온 시간보다 충동적 욕망의 가치가 지배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에 최근 6개월간의 행실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확고하고, 대체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15) 제15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7월 30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16) 제16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8월 13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2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0명, 기각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1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10명에 대하여는 인용을, 1명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기각으로 결정된 신청인은 중학생 때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을 계기로 폭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사망 사건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군대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계급 체계가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해, 살상 무기를 들고 타인을 해치는 훈련을 받는 군대는 평화를 이룩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모든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신념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쳐 논의 끝에 기각으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신청인에 대한 위원들의 주요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의 발로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쟁 반대, 비폭력, 평화주의, 군 복무 거부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회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의 신념의 유무가 아니라 그 깊이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념은 있지만 그 신념의 강도와 깊이가 충분하다고 평가될 기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순히 친구들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충돌을 회피하는 수준으로 보이고, 읽었던 책 2권 외에 비폭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 속의 기제 혹은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역 편입 심사는 비폭력의 가치가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지를 군 복무 제도라는 무거운 국가 제도와 견주어 충분히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받는 자리이나, 신청인은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비폭력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진술은 있으나 그 깊이와 강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의 대안학교에서도 과도한 공동체 생활이 부담스러워 자퇴한 바 있고, 공군 입영 후 3일 만에 불안 장애 사유로 귀가한 사실 등을 보면 단체생활에 대한 부적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소 귀가 후 받은 상담 치료에서도 집총 거부보다는 폭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통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주된 주제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스스로도 군 복무 거부 의사와 회피 의사가 공존하고 있으며 군 복무 거부자와 군 생활 부적응자 모두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도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이 평화주의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단체생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경직된 위계질서나 통제 등에 대한 반감 등이 더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복무 제도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대체복무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완역에 대하여는 지금도 각오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답변하는 등 대체역 복무 의지가 다소 약해 보이

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합숙 복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대체복무 의지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공군에 지원 입영하였으나, 통제된 생활로 인한 압박과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도록 강요받고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을 쉬기 어려웠다고 하고, 3일 만에 귀가하여 이후 병역 거부 관련 지식을 탐구하고 앎이 깊어지면서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의 평화적 신념은 진실하며,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더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체복무는 본인의 양심과 병역의 의무를 공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바, 본인이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학창 시절 본인이 당했던 폭력, 군대 내 폭력 사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으며 타인을 해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만의 평화주의 신념을 형성했다고 하였고, 신청인의 생명 존중, 평화주의 사상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다는 주변인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한다.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 보이나, 군 복무 거부에 관한 사회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신청인이 공군 입대 후 3일 만에 부적응을 이유로 귀가한 이력과 대면심사에서 차분한 어조로 자신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을 들어보았을 때 신청인에게 대체역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 의견이다.

신청인은 대체역의 복무 기간과 업무 내용 등 대체역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잘 해내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성실 복무의 의지도 확인된다. 신청인이 단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대체복무에 지원한 것이 양심과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인용된 10명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군 복무 거부는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진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년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와 연관되어 형사사건화도 가능한 행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종교적 신실함의 깊이가 충분히 깊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그러한 일탈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실이 인정되며 군 복무 거부 신념에서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17) 제17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9월 3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1명, 기각 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3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11명에 대하여는 인용을, 1명에 대하여는 기각을 결정하였다.

기각으로 결정된 신청인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교리에서 금지하는 흡연 등의 행동을 이유로 성인이 되어 미침례 전도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종교활동을 중단하였다가 회심하여 5년여 만에 복귀를 원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신이 알고 믿는 여호와는 살인과 폭력을 싫어하는데 군대는 그런 여호와의 신념과 상반되는 목적과 결과를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누군가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군대에 갈 수 없기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신청인에 대한 위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자라나 일정 기간 종교생활을 한 적은 있으나, 침례를 받지 않았고, 교리를 실천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중 내 그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태이다. 회중 장로도 신청인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역병입영일 연기가 가능한 일수를 모두 사용한 후 최종 입영 통지 시점인 금년 4월 말부터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등, 깊고 진실되며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역 복무 의지를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중3부터 20세까지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활동을 하였으나 중고등학교 시절 일반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흡연, 음주 등 좋지 못한 습관을 익혀 22세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23세 이후 동료 회중 형제와 주 1회 성서 연구를 약 2년간 했으나 흡연 등 습관을 버리지 못해 회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흡연 습관을 고쳐야 침례를 받고 떳떳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도 침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종교생활과 본인의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아직 스스로의 교리 위반 행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였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을 때 한 번도 대답하지 못한바,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근간인 종교에 대한 확신도 미흡해 보이고, 신앙생활에 대한 일관성도 부족하다.

신청인은 그간의 진술을 통해 볼 때 폭력적인 내용이 있는 영화 리뷰, 게임을 접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고, 교리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해온 비신도 친구들과 1년 전까지 교제했던 것으로 보아 교리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의 민감도가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인용 의견

신청인은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라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호와가 싫어하는 살인과 폭력을 거부해야 하기에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비록 신청인이 교리에서 금지하는 여러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군 복무 거부에 관한 개인적 신념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종교생활을 중단하여 입영할 줄 알았으나 군 복무만큼은 사람을 죽이는 연습이라 싫고 다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며 2배의

복무 기간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서부터 배워온 종교적 신념의 영향으로 대체복무에 지원한 것인 만큼 선택이 존중받길 원한다고 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재 여호와의 증인 소속이 아니고 관심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어려서부터 마음에 자리한 군 복무 거부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다른 교리에 비해 군 복무 거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현역 복무는 비록 1년 6개월로 짧지만 예비군 기간까지 합하면 다시 증인으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며, 다시 회중 형제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군 생활 동안 고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누군가를 죽이는 연습을 하려고 총을 잡는 게 싫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종교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해 보고 안 되면 수감생활이라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체역 편입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18) 제18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9월 17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3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2021년 여호와의 증인 생활을 시작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친 두 달 뒤인 2022년 8월 성서 공부 및 종교집회 참석을 시작하여, 점차 신앙심이 깊어져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하였음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권유한 아버지의 종교생활 기간도 짧을뿐더러 신청인 역시 그 짧은 기간에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1년에 2박 3일 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복무 형태와 강도는 집을 완전히 떠나 군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야 하는 현역의 복무 형태나 강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현역 복무 후 뒤늦게 종교를 접하고 점차 신앙심이 깊어져, 예비군 2년차 때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3년차가 된 2025년에는 양심상 군사 활동이나 훈련에 더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진정성이 인정되고, 비록 침례 전이지만 충실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신청인이 대체역 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성실 근무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하였다.

19) 제19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0월 15일
참석 위원	위원장 등 11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6명, 각하 1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7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16명에 대하여는 인용을, 필수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 불응한 1명에 대하여는 각하를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생활을 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년 6개월가량 중단한 이력이 있고, 학업·군·종교생활 등의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사전심사에 기각 의견이 제출되어, 전원회의에서 대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 및 주변인의 진술과 그간의 신앙생활 내역 및 신청인과의 문답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신청인이 중간에 방황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다시 종교생활에 매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종교생활을 중단한 기간에 믿음의 부침이 있고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도 있었으나, 현재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 보이고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역에 대한 의지도 인정된다.

신청인은 성경 구절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바, 군 복무 거부에 관한 신념 및 대체역 복무 의지가 강하고 대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은 뒤 고등학교 졸업 뒤까지 종교생활을 중단하였으며, 그 기간에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상근예비역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 2022년 11월 두 번째로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료 신도의 도움으로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어 2023년 1월 신앙생활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종교생활을 재개한 이유가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종교적 신념 자체의 확고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종교생활을 중단했던 기간 동안에 권투나 검도를 배우는 등 교리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하고, 부적절한 게임이나 스포츠물 등에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고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기술 및 진술하는 등, 종교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 강도와 깊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전심사에서 기각 의견이 제출된 또 다른 신청인에 대해서도 대면심사가 있었다. 해당 신청인에 대해서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이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리 위반 이력은 장로에게 고백하여 회중의 제재를 받았으나 더 중한 교리 위반이자 형법상 위법인 행위에 대해서는 회중에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전심사 시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전자는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언제든 취소 가능하다고 듣고 담임 교사가 지원서 작성을 권유해 거절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을 뿐 입영 의사는 없었다고 한 점이 인정되며 후자는 침례 전의 일이라 회중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군 복무 거부 신념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고려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20) 제20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1월 5일
참석 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등 10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 이의신청 심사 : 기각 1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으로 의결하였다. 그중 어머니의 영향으로 장로교인으로 성장하였으나 성인이 되어 여호와의 증인을 접하고, 학군장교로 만기전역한 후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시작하여 예비군 3년차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 사전심사에 기각 의견이 제출되어, 전원회의에서 대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대학 재학 중에 여러 기독교 교단을 방문하며 신앙을 탐구하던 중 지인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을 알게 되어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으며, 군대 전역 후 직장을 구하고 삶이 자리잡은 후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여호와의 증인 회중을 찾아가 종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동료 신도와 함께 주 3회 성경을 공부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1월에 침례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인은 그 과정에서 관련 성구에 따라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 사용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양심적 결심을 하게 되었고, 예비군 훈련 또한 신앙의 핵심 교리와 충돌한다고 생각하기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병역 거부 신념이 확고하고 대체역에 대한 이해 및 의지가 확인된다.

비록 활동 기간은 짧지만, 신청인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종교를 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서, 스스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그런 본인의 신앙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2024년 12월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대학 때까지 생활 속에 있었던 개신교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직 충분히 뿌리내렸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종교의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인정되나, 그 깊이와 강도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적 누적이 충분하지 않아 대체역 편입신청을 인용하기에는 이르다.

신청인은 대학에 다니던 중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였으면서도 학군장교를 선택하여 군사훈련을 받았고, 예비역으로 동원훈련에도 참여하였으며, 현재 미침례자의 신분이다. 예비역은 현역과 병역의 강도와 임무가 다르고, 또한 짧은 시간에 확고한 양심이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 외에도 육군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1년차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 사전심사에 이어 기각의견이 제출되어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신청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집안인 외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에 참여하였지만, 침례받기 전인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기로 하고 종교활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신청인은 형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다시 관심이 생겨 전역 2개월 뒤인 2024년 8월 종교생활을 재개하였고, 1년 만인 2025년 8월 침례를 받았다. 사전심사에 이어 신앙의 방향이 비록 정해졌더라도 그 강도와 깊이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각의견이 있었으나, 신앙생활을 재개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 일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종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고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점이 받아들여져 인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난 17차 전원회의에서 편입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이 이의신청[30]을 하여, 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대체역 심사 제도에 재심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재심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신청인의 종교생활이 보다 깊어지고 진지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는 신청인에게 원래의 기각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투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30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의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2025), 『제4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5-28쪽 참조.

21) 제21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1월 19일
참석 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등 11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4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22) 제22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2월 3일
참석 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등 10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2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2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신청인 중 사전심사에서 음란물과 폭력 게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한 신청인이 있는데, 이는 교리에서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 아직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므로 신앙의 깊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기각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중단없는 신앙생활을 해 왔으며 성서 연구 등을 통해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군 복무를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이 형성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어 인용으로 결정되었다.

23) 제23차 전원회의

개 최 일	2025년 12월 17일
참석 위원	위원장 직무대리 등 11명
회의 결과	• 사실조사자 대체역 편입심사 : 인용 18명 • 대체역 편입심사 결정기간 60일 연장 : 3명

위원회는 사실조사자 18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 안건을 모두 인용 결정하였다. 그중 두 차례의 동일 교리 위반으로 각각 비공개 책망과 제명의 징계를 받았다 복귀한 지 8개월이 된 여호와의 증인 신청인에 대하여 대면심사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의 주요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용 의견

신청인은 이웃을 저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칼을 잡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를 원하며, 군 복무가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해칠 수도 있는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양심과 교리에 반한다고 보아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 교리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복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폭력적 언행이나 부정행위 등 교리를 위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역 복무 의지가 인정된다.

신청인은 교리 위반으로 제명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계 기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객관적인 비위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징계 기간을 거치면서 종교적 신념이 확고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각 의견

신청인은 진정한 회개를 하였음을 나타내 보여 복귀가 빨랐다고 하지만, 군 복무를 고민해야 할 시기조차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대한 위반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성경 구절에 따라 사람을 해치는 전쟁 연습에 참여할 수 없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특정 교리는 두 번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신청인이 교리를 지킴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지킨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한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라 자연히 군 복무 거부 신념을 형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리 위반으로 1년간 책망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 사전심사에서 기각 의견이 제출된 신청인의 건이 논의되었다. 징계가 해제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중하게

판단되고, 위원들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기보다 사탄의 덫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모습이 책임 전가로 비치며, 징계 해제 시기와 대체역 편입신청 일자를 비교해 볼 때 징계가 해제되기도 전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기각 의견이 있었으나, 어려서부터 꾸준히 종교활동을 해 왔고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양심을 형성한 것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인용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사무국은 2026년도 대체역 편입심사 계획(전원회의 20회, 사전회의 50회 예정)을 보고하였다.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부록

대한민국헌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

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57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대체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①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병역법」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001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0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0805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557호, 2026. 4.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1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등)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

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이름표·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2025. 7. 8., 2026. 8. 25.〉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

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복무형태·근무부서·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30.]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

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

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병역법」 제18조 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⑯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⑱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⑲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⑳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㉒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㉓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㉖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㉗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169호, 2024. 1. 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0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43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대통령령 제35758호, 2025. 9. 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국방부령 제1188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5., 2022. 2. 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삭제 〈2022. 2. 9.〉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5. 제4호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하 같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5.〉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5.〉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

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9. 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6호, 2020. 6. 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7호, 202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80호, 2022.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1호, 202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88호, 2025. 9. 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3. 28.] [병무청훈령 제2134호, 2025. 3.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체역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4조(대체역의 소집대상) ① 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15.〉

제4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 전자송달
2. 그 밖의 사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

[본조신설 2022.7.5.]

제5조(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편입취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체역 편입자(예비군대체복무 9년차 이상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 2회(5월, 11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그 사유가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수형사실을 확인하여「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2장 대체복무요원

제1절 대체복무요원 소집

제7조(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8세 이상인 사람
2.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4.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병역법」제86조의 죄를 범한 사람 〈개정 2021.10.29.〉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4.2.15.〉
6. 제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1.10.29.〉
7. 삭제 〈2021.10.29.〉

②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는 소집대상자로서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대학 복학 또는 재입학에도 불구하고 소집연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집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집연기 처분한다.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10.29.〉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9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소집이 연기된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④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⑥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정보화자료로 소

집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에 전송하여 소집일자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장소 약도 등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소집 장소는 모이는 장소와 그 장소의 주소를, 통지번호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번호, 소집일시에는 집결시간을 기재한다.

④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전에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를 사전확인하여 사망자, 수형자 등 소집비대상자를 소집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하거나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1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제1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2.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
3. 「병역법」 제6조제2항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집일자별 소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집일자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 ①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2조제1항, 같은 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영"을 "소집"으로 "현역병"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②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의 연기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입영·소집일자 연기 횟수(대체역 편입 이전 질병 사유 입영일자 연기 횟수 포함)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소집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④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 출국자의 소집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

사 대상이 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25.3.28.〉

② 병무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을 해당 소집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도·인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도관과 인접관은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2.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인접결과 정리' 란에 각각 날인 또는 서명
3. 인도관은 제2호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인도를 마친 후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에 따른 인도·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인도관과 인접관이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인도·인접 결과를 전산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0.29.〉

제15조(지연도착) ① 인도관과 인접관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연 도착할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인접결과 정리'란을 빈칸으로 두고, 인도·인접서는 지연도착할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② 인도관과 인접관은 지연도착 신고일에 응소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의 '인도·인접결과 정리'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도·인접서의 인원을 수정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연도착한 사람을 소집 처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자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의 소관부서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5.3.28.〉

제17조(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14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는 인도·인접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인도·인접

결과 관련서류와 한데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 행방불명 및 기피자 처리 등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한 서류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1.10.29., 2025.3.28.〉

제2절 대체복무요원 복무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 ① 대체역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에 소집일 전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5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0.29.〉

제19조(대체복무요원 명부 작성)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한다.

제20조(대체역 복무기록표 정리)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대체복무요원 1인 1매씩 갖추어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병역법」제63조의2제2항에 해당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여 복무기간 단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축된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6조(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제6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로 소집해제자에 해당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9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집일자에 소집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 ①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에 해당이 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 절차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를 따른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① 병무청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병역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대체역 복무기록표의 복무연장 사항 등을 병무청 전산시스템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군대체복무

제1절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제3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 대체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2.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제32조(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별도 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3. 도망,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0.29.〉
4.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 이월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야

하는 사람

5.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중에 퇴소한 사람
6.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제3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높은 사람(6년차부터 1년차 순),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소집해제일(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입일자)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

1.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제33조의2(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하여금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소집에 대해서는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접수순서, 나이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선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일자·장소가 결정된 사람은 해당 소집일 45일 전까지 소집일자·장소를 변경하거나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8.]

제3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대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본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소집통지(소집통지 안된 소집일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을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인도·인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불응자의 처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을 "예비군대체복무"로, "「병역법」제88조"를 "「병역법」제90조"로 본다.

제2절 예비군대체복무 사항

제3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 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제31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해당하는 경우 각 연차마다 3박4일로 한다. 이 경우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지연도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도·인접 후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되는 사람은 다음의 소집기간에서 4시간을 공제한다.

제3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계산하여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한다.

$$\frac{\text{해당연차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 - \text{이수시간}}{\text{해당연차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시간}} \times \text{「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의 훈련시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한다.

제3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

1. 「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학생
2.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3.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답 경작 등)에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2.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⑥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한다.

⑦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는 제33조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

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개정 2025.3.28.〉
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

②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4.2.15.〉

제42조(보상 및 치료 등) ①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외의 대체복무요원의 순직·공상자 보상, 심사, 치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무, 개최, 회의, 심의 절차, 심의자료 요청, 회의록, 수당 등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규정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의 장"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3조(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각종 명부 등의 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명부 및 처리부 등의 자료는 전산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여비지급)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9.〉

제4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2.15.〉

부칙 〈병무청훈령 제17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종교·신념 사유로 연기한 해당연차의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한다.

부칙 〈병무청훈령 제1835호, 2021. 10.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훈령 제1890호, 2022. 7.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훈령 제2134호, 2025. 3.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5년)

발행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3층(둔산동, 파이낸스빌딩)

Tel. 042-605-2218

Fax. 042-605-2230

발행일

2026년 10월

디자인·제작

㈜한결엠

Tel. 02-6952-0551

Alternative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대체역 심사위원회